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16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이준석 · 이주영 · 박충권
나경원 · 고동진 · 권성동
박준태 · 김장겸 · 김기현
박수민 · 최형두 · 천하람
장동혁 · 김재섭 · 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정보통신망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므로 짧은 선거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이 선거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임.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예

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장에 제4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7(외국인의 정치 관련 정보 게재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이하 “선거기간”이라 한다) 중 외국인이 정치에 관한 기사나 논설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치 관련 정보”라 한다)를 게재할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 중 해당 선거와 관련된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로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사업자로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3. 그 밖에 정치에 관한 기사나 논설을 게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하여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확인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기간 동안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적 확인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적 확인 후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확인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치 관련 정보의 게재가 제한되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4조의27제6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44조의27(외국인의 정치 관련 정보 게재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 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 거기간(이하 “선거기간”이라 한 다) 중 외국인이 정치에 관한 기사나 논설에 대한 의견을 게 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치 관련 정보”라 한다)를 게재할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 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 중 해 당 선거와 관련된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u>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3. 그 밖에 정치에 관한 기사나 논설을 게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하여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확인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기간 동안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적 확인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적 확인 후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확인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치 관련 정보의 게재가 제한되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2. (생략) <u><신설></u> 6의2. ~ 12. (생략) ② ~ ④ (생략)	<u>다.</u> <u>⑦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6조(과태료) ① ----- -----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u>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6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